

##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

### 표준 이용 약관

#### 1. 용어 정의 및 해석

1.1 본 약관에서 달리 명시되거나 문맥상 달리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문자로 표기된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계열사란**, 본 약관의 당사자와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와 지배, 피지배 또는 공동지배 관계에 있는 일체의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약관이란**, 본 표준 이용 약관, 구매 주문서 및 일체의 작업명세서 또는 서비스의 관리를 위한 기타 유사 문서 또는 본 약관을 참조하는 고객의 기타 문서를 의미하며, 이러한 문서들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

**고객이란**, 본 약관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를 주문하는 고객 그룹에 속한 계열사를 의미하며,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주문하는 경우 **고객**이란 Marsh & McLennan Companies, Inc.를 의미한다.

**고객 그룹이란**, 고객 및 고객의 모든 계열사를 의미한다.

**고객의 주소지란**, 고객 그룹의 일원이 수시로 소유하거나 리스하거나 라이선스를 받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지배하는 부지를 의미한다.

**영업일이란**, 일(1)일을 의미한다 ( 토요일 또는 일요일 또는 현지의 공휴일 제외).

**요금이란**,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본 약관에 의해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대가로 고객이 공급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금원을 의미한다.

**기밀 정보란**, 구두, 유형(tangible) 또는 문서 등 그 형식과 관계없이 본 약관의 당사자 일방(일방 당사자)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개인정보 포함) 중,

- (a) 그 성격상 기밀 사항이거나,
- (b) 상대방 (또는 아래에 정의된 정보수령자)이 기밀임을 알고 있거나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 (c) 일방 당사자 (또는 아래 정의에 따른 정보공개자)가 기밀 사항으로 지정하였고,

본 약관(또는 그 대상물)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공개되거나 상대방이 인지, 습득, 개발 또는 접근하게 된 정보를 의미한다.

**지배란**, 계약, 지분적 소유권, 이사회 구성에 대한 참여권, 약정 또는 기타 수단에 의해 대상 법인의 경영 및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지배한다거나 지배 받는다는 용어에는 각기 그에 상응하는 의미가 있다.

**개인정보보호 법률이란**, 일체의 관련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률 및/또는 규정(EU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 Irish Data Protection Acts 1988 and 2003, Australian Privacy Act 1988 (Cth), UK Data Protection Act of 1998,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Canada) ("PIPEDA"), HIPAA, 미국에서 제정된 연방 및 주 데이터 침해 법률, California AB 1298, Loi 78-17 du 6.01.1978 (France), Organic Law 15 / 1999, 13 December, of Personal Data Protection (Spain), Law 67/1998, 26 October, of Personal Data Protection (Portugal), the Swiss Federal Act on Data Protection, Law No. 25,326/2000 (Argentina), Lei 12.965/2014 (Brazil) 및 위 법률들의 개정 사항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개인정보**란 개인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에 관한 일체의 개인적, 의료 관련 및/또는 재무관련 데이터, 그리고 고객 및/또는 그 계열사에 의해 또는 고객 및/또는 그 계열사를 대리하여 생성되거나 공급업체 및/또는 계열사에 제공되고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에는 문서 및 전자적 수단을 포함하여 매체 또는 형식과 관계없이 상기에 적시한 일체의 데이터가 포함된다 .

**인도물**이란, 구매 주문서 또는 작업명세서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기타 유사 문서에 명시된 항목 및 본 약관에 따라 공급업체가 고객을 위해 개발하거나 생성하는 기타 일체의 자료를 의미한다 .

**정보공개자**란, 일체의 기밀 정보와 관련하여 기밀 정보를 보유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발효일**이란, 구매 주문서의 날짜와 공급업체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짜 중 이른 날짜를 의미한다.

**제품**이란,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항목 및 공급업체에 의해 또는 공급업체를 대리하여 고객에게 제공되는 기타 일체의 자료 또는 항목을 의미한다.

**업계 모범 사례**란, 적절한 경험,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훈련이 되었으며 효율이 높은 충분한 수의 인력에 의해 소정 수준의 기술, 분별력, 주의력 및 예측력과 더불어 방법론, 전문적 기준 및 성과가 적용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업계 모범 사례는 통상적으로 좋은 평판, 기술 및 경험을 갖춘 인력에 의해 실행될 것이 기대되며 본 약관에 따라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 또는 인도물과 본질적으로 동일한(또는 상당히 유사한) 서비스 또는 인도물(또는 그 전부)이 제공되어야 한다.

**면책당사자들**이란, 고객 및 고객 그룹의 각 구성원을 의미하며, 각각의 **면책당사자** 또한 그에 준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지급불능**이란, 다음 사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의미한다.

- (a) 공급업체 소유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파산관재인, 재산보전관리인, 관재인 또는 관리자, 청산인 또는 그와 유사한 관리자가 선임되거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해산 신청이 있는 경우
- (b) 공급업체가 채권단 전체 또는 특정 범주의 채권단과 일체의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제의한 경우
- (c) 기타 관련 법률에 규정된 경우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상표, 서비스표, 로고, 상품명, 상호, 도메인 이름, 저작권(미래의 저작권 포함), 데이터베이스권, 저작권격권, 디자인권 기밀 정보에 대한 권리(노하우, 사업 방법, 데이터 및 영업기밀 포함) 및 기타 모든 지식재산권을 의미하며, 각각의 경우에 있어 상시로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효력이 존속 또는 유지된다.

**최소 관리 기준**이란, 고객에 의해 지정되고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공급업체가 데이터 프라이버시, 기록 관리, 사업 연속성 관리, 인원 선별, IT 보안, 물리적 보안, 논리적 액세스 관리(Logical Access Management), 지속 가능성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관리 기준을 의미한다.

**구매 주문서**란, 고객이 발행하는 구매 주문서를 의미하며, 구매주문서는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해야 하고 본 약관과 관련된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내역이 표시된다.

**정보수령자란**, 일체의 기밀 정보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제공받거나 달리 알게 되는 당사자 또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기밀 정보를 개발하거나 습득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

**관련 법률**이란, 관할을 불문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및/또는 제공받음에 있어 관련이 있는 일체의 관할을 포함) 본 약관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일체의 법률, 법령, 조례, 명령, 규정, 지침 또는 기타 그와 유사한 규칙 및 그 후속 수정 사항을 의미하며 개인정보보호 법률도 포함한다.

**서비스**란, 본 약관에 따른 제품의 공급을 포함하는 공급업체의 모든 의무 및 본 약관에 명시된 서비스의 이행을 의미한다.

**사양**이란, 구매 주문서에 명시되거나 기타 서면에 의해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사양을 의미한다.

**공급업체**란, 본 약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를 의미한다.

**공급업체 그룹**이란, 공급업체 및 공급업체의 모든 계열사를 의미한다.

**공급업체 인력**이란, 공급업체에 의하여 또는 공급업체를 대신하여 또는 공급업체의 하청계약자에 의하여 고용되거나 업무에 관여하게 되는 모든 직원, 임원, 이사, 계약자, 컨설턴트, 대행사 직원을 의미한다.

**기간**이란,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기간을 의미한다.

1.2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기타", "포함", "포함하는", "예를 들어" 및 "특히"라는 용어는 그 용어가 지칭하는 단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않으며, 만일 해당 단어와 관련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 이후 사용되는 단어의 범위가 선행하는 단어와 동일한 것으로 제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2 시작 및 기간

본 약관은 발효일에 효력이 발생하여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적용되고, 만일 구매 주문서에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본 약관에 따라 약관이 해지되지 않는 한 서비스가 완료될 때까지 존속된다.

## 3 조건의 적용

본 표준 이용 약관은 (a) 발효일 전후를 불문하고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보낸 주문, 제품의 사양, 서신, 송장 또는 기타 통신문의 인정 또는 수락 문구에 포함되거나 참조된 기타 일체의 조건을 배제하고 이러한 조건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b) 작업명세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서비스와 관련된 문서에 기재된 본 표준 이용 약관과 상충하는 일체의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4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

4.1 공급업체는 본 약관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일체의 관련 시한 또는 일정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 서비스 및 제품을 제공해야 하며, 업계 모범 사례 및 모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가운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급업체 인력은 Marsh & McLennan Companies 행동 수칙의 관련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참조: [http:](http://)

[//www.mmc.com/about-us/about-culture.html#tg](http://www.mmc.com/about-us/about-culture.html#tg)

g).

4.2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 인력이 제품을 공급, 제공 또는 설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a)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b) 계약을 위반하거나 (c) 고의 및/또는 과실로 인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함으로써 초래되는, 일체의 청구, 요구, 소송과 관련된 청구원인, 손실, 경비, 책임, 손해 및 비용(일체의 수익 상실, 평판 손실, 모든 이권, 벌칙, 합리적인 수준의 법률 수수료 및 경비, 기타 전문가 비용 및 경비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인한 면책당사자, 이사, 임원, 직원, 대행자 및 하청계약자의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고 면책당사자 등의 책임을 면제 및 보호해야 한다.

## 5 검사, 테스트 및 샘플

5.1 고객이 요청할 경우 공급업체는 제품이 제공되기 전에 제품의 샘플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

5.2 고객은 제품 배송 전 제조, 처리 및 보관 기간 중 언제든지 제품을 검사하고 테스트할 권한을 보유한다. 공급업체는 고객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상기 목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자신의 비용으로 제공하거나 조달해야 한다.

5.3 5.2조에 따라 수행된 일체의 검사 또는 테스트 결과에 기초하여 제품이 본 약관에 부합하지 않거나 본 약관에 따라 제조 또는 처리 과정이 완료될 가능성이 적다고 고객이 판단하는 경우, 고객은 공급업체에 해당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제품 또는 제품의 제조 또는 처리

과정의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4 5조에 따라 수행된 일체의 테스트 또는 검사와 관계없이, 공급업체는 제품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상기 검사 또는 테스트는 본 약관에 따른 공급업체의 의무를 감경하거나 달리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6 제품의 배송

6.1 제품은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날짜 또는 기간 내에 고객의 주소지 또는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기타 주소지로 배송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정상적인 업무 시간 중에 배송되어야 한다.

6.2 공급업체는 배송되는 제품을 수령하기 위해 고객에게 필요한 일체의 지침 또는 기타 정보를 배송 시점보다 충분히 앞선 시점에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6.3 제품은 특성 및 기타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양호한 상태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히 포장되어야 한다. 공급업체는 고객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위험 부담 하에 제품을 하역해야 한다.

6.4 고객은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 상자, 스킴, 드럼 또는 기타 물품에 대하여 재사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며 이를 반환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6.5 제품 배송 시점은 본 약관의 중요 사항으로 간주한다.

6.6 모든 제품에는 관련 구매 주문서 번호가 명시되어야 하고 공급되는 제품의 상세 내역이 기재된 설명서가 동봉되어야 한다.

6.7 제품이 분할 방식으로 배송되는 경우, 본 약관은 단일 약관으로 간주되며 분리할 수 없다.

6.8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수량을 초과 하여 제품이 고객에게 배송된 경우, 고객은 초과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일체의 초과분은 공급업체의 위험 부담과 비용으로 공급업체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6.9 제품이 고객에게 배송될 경우, 고객은 제품의 수령을 거부 또는 수락해야 하며, 부당하게 수령 의사를 철회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 고객은 제품의 잠재적인 결함이 명백히 드러난 경우 사후에도 제품의 수령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6.10 제품이 본 약관의 조건에 따라 공급되지 않거나 공급업체가 본 약관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독자적인 재량으로 다음 구제방법 중 하나 이상을 행사할 권한을 보유한다. 다만 이러한 구제방법의 행사는 고객이 행사할 수 있는 기타 일체의 권리 또는 구제방법을 제한하지 않는다.

(a) 공급업체가 반환된 제품에 대한 대금 전액을 고객에게 즉시 환급하는 조건으로 제품(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거부하고 공급업체의 위험과 비용으로 제품을 공급업체에 반환할 수 있다.

(b) 공급업체가 제품의 결함을 모두 바로잡거나 대체 제품을 공급하고 본 약관에 따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공급업체의 비용으로)를 제공할 수 있다.

(c) 공급업체에게 본 약관 위반과 관련되거나 위반의 결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d) 공급업체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즉시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7 소유권, 위험 및 보험

7.1 12 조 (지식재산권)와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품에 대한 소유권과 위험은 제품이 고객에게 배송되는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된다. 이러한 소유권 및 위험의 이전은 제품이 제삼자가 보유하는 일체의 권리(유치권, 요금 및 옵션 포함)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임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 본 약관에 따라 제품에 대한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러한 경우 고객이 제품 대금을 결제함과 동시에 제품에 대한 소유권(위험은 제외)이 고객에게 이전된다.

7.2 공급업체는 자신의 비용으로 (a) 본 약관에 따라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제품의 완전한 교환가치를 보장하는 보험을 구매·유지해야 하며 (b) 전문인배상책임보험(E&O 보험) 또는 공급업체의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의 부보를 위한 보험을 포함하여 기타 적절한 부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단, 보험회사와 부보금액은 고객이 수용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 상기 보험에 관한 보험증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 8 요금, 청구 및 결제

8.1 고객은 공급업체로부터 구매 주문서에 부합하는 완전하고 정확한 송장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공급업체에 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8.2 모든 요금 및 기타 본 약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세금이 제외된 금액으로서, 만일 세금이

부과될 경우 해당 세율에 따라 세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8.3 공급업체는 고객의 송장 발행 요청 사항(전자송장 또는 기타송장)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의무에는 송장의 접수 또는 그 처리 목적상 고객이 지정한 제삼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삼자의 송장 발행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포함된다.

## 9 사업 연속성

공급업체는 (i) 재난 발생 또는 기타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는 사건 발생 시 해당 사건이 본 약관에 따른 의무 사항을 준수할 공급업체의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완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고 (ii) 적절한 백업 계획이 수립되도록 해야 하며 (iii) 고객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사업 연속성 관리와 관련된 최소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10 공급업체 인력, 차별금지 및 환경

10.1 공급업체는 자신이 고용한 모든 공급업체 인력의 행위, 누락, 관리 및 업무 수행에 대하여 계속적이고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

10.2 공급업체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급업체 인력이 업계 모범 사례에 따라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의 비용으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최소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법으로 허용되는 한도까지 인력의 배경 조사를 시행하는 조치를 포함),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인력의 적격에 관한 최소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공급업체가 상기 관리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관리절차를 통해 드러나거나 특정 개인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비추어 볼 때, 업계 모범 사례를 준수하는

서비스 공급업체라면 이러한 인원을 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기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업체는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러한 인력을 본 약관과 관련된 어떠한 임무, 작업 또는 서비스에도 배정할 수 없다.

10.3 다음의 경우, 고객은 고객의 주소지 또는 기타 사업장에 공급업체 직원이 출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공급업체의 직원을 추방할 권한을 보유한다.

(a) 고객이 판단하기에 당해 인력의 존재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기밀유지 또는 보안에 위협이 될 경우

(b) 당해 인력의 존재 자체가 고객의 직원에 대해 적용되는 일체의 규칙 및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단, 고객은 상기 거부 또는 추방 사실을 공급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10.4 10.3조에 따라 특정 인력이 고객의 주소지 또는 기타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더라도 본 약관에 따른 공급업체의 책임이 감경 되는 것은 아니다.

10.5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공급업체는 본 약관의 당사자들이 고용한 일체의 직원 또는 본 약관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입사 지원을 한 자를 성별, 성적 정체성, 인종, 장애, 연령, 종교적 신념, 성적 취향 또는 비상근 지위를 이유로 관련 법률에 반하여 확대하거나 희생시키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10.6 만일 고객이 고객 그룹에 속한 미국 거주자인 경우, 10.6조의 다음 조건이 적용된다.

### 균등한 고용 기회

아래의 의무가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과 공급업체는 41 CFR 60-1-4(a), 60-300.5(a) 및 60-741.5(a)에 따른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상기 요구 사항은 퇴역군인인지 또는 장애인인지 여부에 따라 자격이 있는 개인을 차별하는 행위 및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성적 정체성 또는 출신국가에 따라 개인을 차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나아가 상기 규정은 규정 적용 대상인 원계약자와 하청계약자에게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성적 정체성, 출신국가, 장애 또는 퇴역군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고용과 승진에 있어 차별 철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0.7공급업체는 환경적 영향, 건강과 안전, 다양성 및 인권 정책과 관련하여 업계 모범 사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 지속 가능성에 관한 최소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0.8요청이 있을 시 공급업체는 관련 법률에 따른 모든 증서를 신속하게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 11 보증

11.1공급업체는 발효일로부터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진술 및 보증한다.

- (a) 본 약관에 따라 공급업체는 자신이 부여하는 라이선스를 완전하게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 (b) 적절한 기술, 주의 및 근면성을 바탕으로 업계 모범 사례에 따라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다해야 한다.
- (c) 본 약관에 따른 공급업체의 의무이행, 고객이 서비스 및/또는 인도물을 수령하고 사용하는 행위,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일체의 지식재산권,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공개하는 일체의 기밀 정보, 일체의 제품, 그리고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부여한 라이선스를 통한 권리의 행사가 제삼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d) 제삼자의 최소 관리 기준에 관한 고객의 질문지(고객이 공급업체에 대해 작성을 요청한 경우)에 대한 답변이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진실하고 완전하고 정확하며, 일체의 중요한 측면에서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 (e) 제품이 수량, 품질 및 적용의 측면에서 구매 주문서 또는 사양(또는 두 가지 모두)에 명기된 바에 부합한다.
- (f) 상기 11.1(e)조와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품에 결함이 없고 품질이 만족스러우며 공급업체가 제시하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알려진 목적에 적합하다.
- (g) 제품이 모든 측면에서 다음 각 호에 일치 또는 부합한다.
  - (i) 당사자 일방이 제공하고 상대방이 수락한 샘플 또는 패턴
  - (ii) 사양
- (h)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모든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한다(제품이 공급되는 시점에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대하여 적용되는 모든 관련 법률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
- (i)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가 변경되는 경우 관련 직원이 자동적으로 이전된다는 취지의 일체의 법률은 본 약관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 공급 또는 공급업체의 변경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기 법률의 범위에는 현지에서 적용되는 EU Acquired Rights Directive 77/187/

EL(Directive 2001/23에 의해 수정되고 통합됨)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j) 적절한 뇌물 금지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해야 하며, 고객을 대리하든 기타 개인을 대리하든 관계없이 누구에게든(공무원 포함) 부적절한 목적을 위해 또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체의 재무적 또는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부여해서는 안되며, 상기와 같은 이득을 요청하거나 수락해서도 안 된다.

11.2 고객의 기타 권리 또는 구제방법을 침해함이 없이, 공급업체는 고객의 요청을 받는 즉시 배송일로부터 12개월 동안 결함이 발생한 모든 제품을 자신의 비용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해야 한다(고객의 선택에 따름). 단, 그러한 결함이 적절한 방법에 따른 사용 중에 발생하였고 결함의 원인이 잘못된 설계,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소재 또는 기술, 제품의 사용과 관련된 공급업체의 잘못된 지침 또는 공급업체가 본 약관의 조항을 위반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수리 및 교체된 제품에 대해서는 배송, 재설치 또는 테스트(각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가 이루어진 날 중 수리 또는 교체 후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상기 의무 사항이 적용된다.

## 12 지식재산권

12.1 공급업체는 고객에게 인도되는 모든 인도물이 고객의 재산이라는 데 동의한다.

12.2 본 약관 체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소유였던 모든 지식재산권은 계속해서 해당 당사자의 소유물이다.

12.3 본 약관에 따라 공급업체는 전세계적으로 로열티 부담이 없으며 배타적이지 않고 영속적이며 양도

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권리에 대한 라이선스(재라이선스 부여 권한 포함)를 고객, 고객 그룹의 각 구성원, 그 대행자 및 계약자에게 부여한다.

(a) 제품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

(b) 다음 각 호를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되는 기타 일체의 지식재산권

(i) 서비스 또는 인도물의 수령 또는 사용

(ii) 고객이 제품 소유권에 따른 모든 이득을 누릴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사항

(iii) 본 약관에 따른 의무이행 및 권리행사

12.4 공급업체는 서비스제공, 또는 면책당사자에게 제공된 제품, 인도물, 공급업체 기밀 정보 및/또는 서비스의 사용 또는 소유 행위가 제삼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으로 인한 배상 청구, 요구 또는 소송으로 인해 면책당사자, 그 이사, 임원, 직원, 대행자 및 하청계약자에게 일체의 청구, 요구, 소송원인, 손실, 경비, 책임, 손해 및 비용(일체의 수익 상실, 평판 손실, 모든 이권, 벌칙, 합리적인 수준의 법률 수수료 및 경비, 기타 전문가 비용 및 경비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고 면책당사자의 책임을 면제 및 보호해야 한다.

## 13 기밀 유지

13.1 정보수령자는 정보 공개자의 모든 기밀 정보를 영구적으로 비밀 또는 기밀로 취급하고 이를 유지해야 하며, 본 약관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자의 서면 동의 없이 기밀 정보를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공개방식은 서면 또는 구두 또는

기타 일체의 방식을 불문함). 정보수령자는 정보 공개자의 기밀 정보를 계열사, 하청업자 또는 대행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단, 정보를 수령하는 제삼자에게는 본 약관에 명시된 바와 동등한 정도의 기밀유지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정보공개자에 대하여 제삼자의 기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함), 그 외에도 본 약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정보수령자의 직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상기 조항은 공급업체의 기밀 정보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거나 제품에 통합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3.2공급업체는 본 약관에 따른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안 조치가 실행되고 유지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 IT 보안(IT Security), 물리적 보안(Physical Security) 및 접속 관리(Logical Access Management)에 관한 최소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3.3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업체 인력은 고객으로부터 접근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서버 룸, 데이터 센터, 전기 또는 전화 배전함 또는 고객이 중요한 보안 출입 구역으로 간주하는 기타 일체의 구역에 접근할 수 없으며, 접근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접근 중에는 고객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13.4공급업체는 서면으로 고객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이상 일체의 광고, 뉴스 보도, 마케팅 자료, 고객 또는 고객 목록 또는 전문/비즈니스 관련 출판물에 고객의 이름을 사용 또는 언급하거나 고객 그룹에 속한 구성원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으며 고객 또는 고객 그룹에 속한 구성원과

관계를 공개할 수 없다. 또한 상기 승인은 고객의 독자적인 재량으로 철회할 수 있다.

## 14 정보보호 및 기록 관리

14.1공급업체는 정보보호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등록 또는 통지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상시 준수해야 한다.

14.2또한 고객이 요구할 경우 공급업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최소 관리 기준을 상시 준수해야 한다.

14.3공급업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a) 고객에게 제품 및/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우

(b) 고객이 명시적으로 지시한 경우

(c)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14.4공급업체는 개인정보를 일체의 제삼자에게 게시,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법률의 요구에 의한 경우는 제외하며, 이러한 경우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14.5공급업체는 개인정보의 불법적 처리 및 실수로 인한 손실, 파기, 손상, 변형 또는 공개에 대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모든 디지털 또는 휴대용 전자적 저장 장치를 통해 저장되거나 처리되는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방법 포함). 고객은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공급업체가 사용하는 기술적·조직적 조치에 관한 상세한 서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14.6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고객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 (a) 개인정보의 당사자가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서면으로 요구한 경우
- (b) 민원 또는 요청이 접수되거나, 본 약관에 따라 처리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장 또는 개인정보보호 법률에 따른 고객의 의무에 대해 알게 된 경우
- (c) 개인정보의 손실, 손상, 파괴 또는 무단 처리 또는 실수로 인한 공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14.7공급업체는 공급업체의 14조 위반과 관련하여 면책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모든 벌금, 벌칙, 비용, 청구, 소송원인, 요구, 책임, 경비, 손해 또는 손실(일체의 수익 상실, 평판 손실, 그리고 모든 이자, 범칙금, 합리적인 수준의 법률 수수료 및 경비, 기타 전문가 비용 및 경비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배상하고 면책당사자를 보호하기로 합의한다.

14.8공급업체는 업계 모범 사례에 따라 적절한 기록 관리 정책을 실행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고객이 요구할 경우 기록 관리와 관련하여 최소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15 책임

15.1어느 당사자도 다음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 (a) 자신 또는 직원(공급업체의 경우 공급업체 인력)의 기만, 도난, 사기 또는 사기적 표현과 관련된 경우
- (b) 당사자 일방 또는 그 직원(공급업체의 경우 공급업체 인력)의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에 의해 발생한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와 관련된 경우
- (c) 손해배상 및 이와 연관되는 의무와 관계된 경우

- (d) 12조(지식재산권)에 해당하는 경우
- (e) 13조(기밀 유지)에 해당하는 경우
- (f) 14조(정보보호 및 기록 관리)에 해당하는 경우
- (g) 상기 제한 또는 배제를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우

15.215.1조와 관련하여,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한도(15.1조에 규정된 책임 제외)는 본 약관에 명시된 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15.315.1조와 관련하여, 고객 그룹의 책임의 한도(15.1조에 규정된 책임 제외)는 본 약관에 명시된 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15.415.1조와 관련하여, 어느 당사자도 부주의, 계약 위반 또는 기타 어떠한 사유로 인한 것이든 관계없이 일체의 간접적인 사업 또는 수익 손실을 포함하는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sup>1</sup>.

## 16 해지

16.1본 약관은 고객이 편의에 따라 최소 14일 전에 공급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16.2공급업체가 11.1(j)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다.

---

<sup>1</sup> 호주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결과적 손실 또는 손해"란 관련 위반행위 또는 정황으로부터 직접적이고 통상적으로 비롯되지 아니한 일체의 손해 또는 당사자 쌍방이 본 약관을 체결한 시점에서는 위반행위 또는 정황의 결과로서 발생하리라고 합리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일체의 손해를 의미한다.

16.3 다음 사건이 발생할 경우 고객은 공급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a) 공급업체가 본 약관에 대한 중대한 위반을 범한 경우(단일 사건 또는 집합적으로 중대한 위반을 성립하는 일련의 사건)로서, 구제가 불가능하거나 위반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더라도 공급업체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 행위를 바로잡지 않는 경우

(b) 공급업체가 지급불능 상황에 처한 경우

16.4 요금이 고객에게 다툼 없이 청구되었고 지급 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공급업체가 최초 통지를 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6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고객이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공급업체는 16.4 조를 언급하는 서면 통지(최초 통지)를 고객에게 보낼 권한을 보유한다. 고객이 최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동안 최초 통지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업체는 본 약관을 해지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추가 통지를 전달할 권한을 보유하며, 추가 통지에는 최초 통지를 첨부해야하고 16.4조(최종 통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야 한다. 고객이 최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툼 없이 청구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업체는 고객에게 본 약관을 즉시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할 수 있다. 단, 고객이 최초 통지에 명시된 대로 다툼 없이 청구된 요금을 지급한 경우(또는 당사자 쌍방이 다른 금액으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6.4 조에 따른 공급업체의 본 약관에 대한 해지권은 고객이 다툼 없이 청구된 금액을 지급하는 즉시 소멸된다.

16.5 본 약관의 해지 또는 만료 또는 서비스의 완료는 각 당사자의 권한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본 약관의 해지 또는 만료 또는 서비스 완료 이후로도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현된 본 약관의 기타 조문 또는 조항의 효력 발생 또는 효력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17 종료 관리

### 17.1 종료 조건:

- (a) 본 약관의 만료 또는 해지, 또는 서비스 완료
- (b) 본 약관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한 공급업체 인력의 배정이 만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 (c) 공급업체 인력이 다른 작업 또는 역할에 재배정된 경우
- (d) 고객의 요청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인력이 다음 사항을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

(i)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 인력(또는 그 모두)이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으나 고객에게 속한 모든 재산(일체의 IT 장비 및 고객 주소지에 대한 접근을 위한 카드, 열쇠 또는 전자 키 등의 출입 자격 증명, 휴대전화 및 기밀 정보 포함)을 즉시 또는 고객이 서면으로 지시한 바에 따라 고객 또는 고객이 서면으로 지정한 제삼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ii) 고객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고객에 의해 또는 고객을 대리하여 공급업체 인력에 제공된 일체의 접근 권한이 완전하고 적절하게 회수되도록 해야 하며, 공급업체 인력이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 즉시 해지되도록 해야 한다. 전자적 형태의 재산이 있을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재산의 안전하고 판독 가능한 사본을 마그네틱 매체에 저장하거나 또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이메일을 통해(해당 정보가 이메일로 전송 가능한 경우) 고객에게 인도해야 하며, 자신이 보관 중인 사본을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파기 및 삭제해야 한다.

17.2 본 약관에 따른 공급업체의 의무를 침해함이 없이, 본 약관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날 또는 어떠한 이유로든 서비스가 완료된 날 중 이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급업체는 공급업체 또는 공급업체 인력을 통해 모든 공급업체의 재산을 고객 현장에서 이동시켜야 하며, 공급업체는 상기한 5일 이내에 이동되지 않은 재산의 손실, 손해 및 도난을 포함하여 일체의 보관 요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17.3 고객이 달리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이 만료 또는 해지되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서비스가 종료된 날 중 이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업체는 모든 개인정보 및 그 사본을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단, 법률 또는 규정에서 반환 또는 파기를 금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러한 경우 공급업체는 해당 개인정보를 더 이상 능동적으로 처리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의 기밀성이 유지되도록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13조(기밀 유지)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17.4 고객이 요청할 경우, 공급업체는 상기 17.1조, 17.2조 및 17.3조를 완전히 준수하였다는 서면 확인서를 고객에게 교부해야 한다.

## 18 일반

18.1 **감사:** 고객은 공급업체가 본 약관을 준수하는지를 감사하기 위해 공급업체에 적절히 통지한 후

(a) 공급업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주소지 또는 서비스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주소지에 접근하거나

(b) 공급업체 인력을 면담하거나

(c) 관련 기록을 복사

할 수 있다.

18.2 **수정 및 변경:** 본 약관을 수정한다는 문구가 서면으로 명시되고 각 당사자가 서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의 변경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

18.3 **양도 및 하청계약:** 공급업체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 이전, 하청계약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만일 본 약관에 따른 공급업체의 의무를 공급업체가 하청계약에 의하도록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공급업체의 하청계약자가 본 약관의 7조, 13조 및 14조에 명시된 요구 사항 및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은 항시 전제된다.

18.4 **통지:** 본 약관에 따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모든 통지 및 동의는 수령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며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인편, 택배 또는 요금 선납 등기우편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공급업체에 전달되는 경우 구매 주문서에 명시된 주소로, 그리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경우 Head of Global Procurement Operations, Marsh & McLennan Companies, Tower Place - UK Head Office, Lower Thames Street, London, EC3R 5BU로 전달되어야 한다.

18.5 **권리의 중첩적 인정:**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에 따른 각 당사자의 권리는 중첩적으로 인정되며 법이 부여하는 권리 또는 구제방법을 배제하지 않는다. 단, 해당 권리가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표시된 권리와 양립 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8.6 추가 보장:** 상대방의 요청 및 상대방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공급업체의 경우 공급업체의 인력들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여해야 함) 본 약관이 완전하게 효력을 가지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대한 서명 및 기타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것을 보장한다.

**18.7 완전한 합의:** 본 약관(본 약관에 따라 작성되고 서명된 기타 모든 문서와 함께)은 당사자 사이의 완전한 합의 및 양해에 해당하며, 본 약관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 사이의 모든 제안 및 이전의 합의, 협약 및 양해를 대체한다.

**18.8 준거법:** 본 약관 및 본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비계약적 의무는 국제사법의 원칙을 고려함이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이 배송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동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단,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이 배송되는 국가의 법률"이라는 문구는 다음 문구로 대체될 수 있다: 1)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이 배송되는 주 또는 영토의 법률" (호주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2) "온타리오 지방의 법률 및 캐나다 연방법" (캐나다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3) "잉글랜드 및 웨일스 법률"(영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4) "미국 뉴욕주의 법률"(미국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5) "브라질 연방 공화국 법률"(브라질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6) "아일랜드 법률"(아일랜드에서 서비스가 제공되거나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UN Convention on Contra

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는 적용되지 않는다.

**18.9 분리 조항:**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할 법원에 의해 법률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조항은 법원에 의해 변경되고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원 조항의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본 약관의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